

학칙 시행 세칙(Ⅰ)

[제정 2007.1.16, 일부개정 2022.1.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세칙(Ⅰ)은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Ⅰ)에 따른다.

제2장 등록

제3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학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3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일수 3/4 선까지 분납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등록은 당해 학기분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 완료된다.

③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적된다.

제4조(등록금의 납부) ①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실험실습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개정 2009.6.17>

②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총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4조 제1항의 등록금에 관한 예외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9.2.15.>

1. 계절학기, 시간제 등록, 학점은행제, 공개강좌 및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학점등록을 인정하여 학점단위로 징수한다. 단, 학점 당 수강료는 학기 및 공개강좌 시작 전에 총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한다.<신설 2019.2.15., 2021.8.18.>

3.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이 수학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계절학기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2.15.>

④ 정규학기(8학기, 5년제 건축학 전공은 10학기) 등록의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6.16>

제5조(등록금의 분납) ① 등록금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4회로 하고, 전액 납부 마감은 수업일수 3/4 선까지로 한다.

<개정 2010.6.16., 2018.2.21., 2020.1.16.>

② 납부마감 기간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효로 하고 당해 학기를 휴학처리 한다. 단, 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한다.<개정 2018.2.21.>

③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는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3.2.19., 2018.2.21., 2021.2.3.>

제6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1.1.26>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신설 2011.1.26.>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신설 2021.8.18.>

③ 학칙 제40조에 의해 제적된 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6호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이 전액 반환에 해당될 때 본인 요청 시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8.18.>

제7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1.26>

②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해서 반환한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이 제적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은 최초 휴학일로 한다. <개정 2007.7.6., 2011.1.26., 2019.2.15., 2022.1.25.>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③ 등록 후 수업일수 1/3 이전에 휴학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수업일수 1/3 경과 후 휴학할 경우 제2항의 등록금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군입대 휴학과 본인의 질병, 사고로 인해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휴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8.18.>

제8조(학업연장자의 등록) ① 학칙 제4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이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수학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4., 2012.11.7., 2013.2.19., 2014.2.4., 2019.2.15.>

1. 1학점~3학점 이하 : 등록금 전액의 1/6 <신설 2019.2.15.>
2. 4학점~6학점 이하 : 등록금 전액의 1/3 <신설 2019.2.15.>
3. 7학점~9학점 이하 : 등록금 전액의 1/2 <신설 2019.2.15.>

4.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신설 2019.2.15.>

② 졸업 이수 학점을 충족하고, 학점이 없는 Pass/Fail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개정 2011.8.24>

③ 삭제<2013.2.19>

제9조(재입학 및 휴·복학생의 등록) ① 재입학생은 학기 초 30일 이내에 등록을 필하며, 복학생은 재학생의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22.1.25.>

② 재입학생은 당해연도 입학금 및 재입학 학년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정규학기(8학기, 5년제 건축학 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 후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등록 후 수업일수 1/3 이전에 휴학을 한 학생이 등록금을 이월한 경우에는 복학 시 당해 학기 등록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3.2.19., 2016.7.13., 2021.8.18.>

④ 수업일수 1/3 경과 후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이월한 경우에는 복학 시 당해 학기 등록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3. 2. 19., 2018.2.21., 2021.8.18.>

⑤ 등록 후 군입대 휴학을 한 학생이 등록금을 이월한 경우에는 복학 시 당해 학기 등록금을 면제한다. 단, 휴학 시 성적대체 인정을 받고 휴학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2.19., 2021.8.18.>

[제목개정 2013.2.19., 2021.8.18.]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육과정 편성 및 구성

제10조(편성원칙) ①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온라인에 의한 학점인정교과목 등 포함)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 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5.8.>

-
- ② 전공과목은 3학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5.8.>
 - ③ 단, 예체능계열 및 인증평가와 관련한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5.8.>
 - ④ 학부(과)별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학과 통·폐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개정 2018.11.14.>

제11조(편성절차) ① 교양교육과정은 주시경교양대학에서 편성하여 주시경교양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이를 학사제도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2.4.18., 2018.11.14., 2021.1. 13.>
②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나 전공에서 편성하여 단과 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이를 학사제도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8.11.14.>
③ 교직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의 개편은 전면 및 부분개편으로 구분하며, 전면개편은 4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 교육과정의 개편 안은 교무처와 주시경교양대학에서 작성하여 주시경교양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처 학사제도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전공 교육과정 개편 안은 학과나 전공에서 작성하여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처 학사제도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4.18., 2015.12. 16., 2018.11.14.>
③ 개편 안에는 개편사유 및 신·구대비표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면개편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며, 전면개편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 29>
⑤ 부분개편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단, 외부사업에 의한 경우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제13조(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교직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9>

- ①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 교양필수선택,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 1. 31., 2010.10.13., 2011.8.24., 2011.12.12., 2021.1.13.>
- ② 전공교육과정은 각 학부(과)의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이를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 ③ 교직교육과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다.<신설 2009. 1.29>
- ④ 다양한 교과목을 조합하여 학생진로 개발을 위한 교양 및 전공교과목 이수과정 체계를 편성할 수 있다.<신설 2009.1.29>

제14조(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양필수 : 공통교양교과목 및 전문교양교과목 중 필수 이수과목<개정 2008.1. 31>
2. 교양필수선택 : 공통교양교과목 및 계열교양교과목 중 선택이수과목<개정 2008. 1. 31>
3. 교양선택 : 교양 및 전문교양교과목 중 자유선택 이수과목<개정 2008.1.31, 2009.1.29, 2010.1.27>
4. 전공필수 : 제1전공의 전공필수과목
5. 전공선택 : 전공선택과목, 개별 및 집단 연구과목
6. 다전공과목 : 다전공 이수전공의 전공과목, 개별 및 집단연구과목<개정 2009.1. 29., 2013.5.8>
7. 부전공과목 : 부전공 이수전공의 전공과목
8. 교직과목 : 교직과정 이수자의 필수과목
9. 삭제<2010.10.13>
10. 자유선택과목 : 위 각호 이외의 과목<신설 2009.1.29>

제15조(교과목코드 부여방법) 교육과정운영상 교과목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2.12>

제16조(학사제도연구위원회) ① 학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전면개편을 제외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관리,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편성·개편 등 학사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제도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8.20.>

② 본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단과대학 부학장,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학사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단과대학의 교육과정 심의를 위하여 단과대학 내에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9.10, 2009.6.17, 2009.11.11, 2012.1.31., 2016.11.9., 2022.1.25.>

③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8.20.>

제2절 교육과정 이수 및 교과목 운영

제17조(이수원칙) ① 교육과정의 이수는 해당 입학연도의 학년·학부(과)의 교육과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적변동 또는 교육과정이 개편된 경우는 현재 본인의 해당 학년, 학기에 편성된 신 교육과정으로 이수한다.<개정 2018.2.21.>

③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이수구분 변경 또는 폐지된 필수과목은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8.2.21.>

④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수를 면제한다.

단, 동일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가 변동되어 이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2.21.>

⑤ 타 학부(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 소속 학부(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다고 해당 학부(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수한 과목의 학점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교양교육과정은 교무처장과 주시경교양대학장이, 전공교육과정은 학부(과)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21.1.13.>

제18조(졸업이수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별지 3과 같다. <개정 2007.7.6, 2008.1.31, 2009.1.29, 2010.10.13., 2011.1.26., 2012.11.7., 2015.12.16., 2021.1.13.>

1. 삭제<2012.11.7>
2. 삭제<2012.11.7>
3. 삭제<2012.11.7>

4. 삭제<2011.8.24>

② 다전공, 교직과정의 이수학점은 학칙시행세칙(Ⅱ)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2013.5.8>

③ 제2항의 각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④ <신설 2009.1.29, 2010.10.13.> <개정 2012.11.7.> <삭제 2015.6.10.>

1. 삭제<2012.11.7>

2. 삭제<2011.12.12>

제19조(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① 전문대학과 협력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은 본 대학교 1학년, 2학년의 전공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전문대학에서 미 이수 교과목은 본 대학교 입학 후 이수할 수 있다.

③ 연계교육과정의 교과이수를 위하여 협력전문대학 및 본 대학교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능력별 학점인정) ① 학칙 제30조의 2에 의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①항의 특별시험은 특별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및 당해 교과목별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특별시험 대상과목은 특별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④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⑥ 특별시험의 세부사항은 특별시험 시행 시 마다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특별학점) ① 정규 수강학기 이외의 자격증 취득 및 외부공인시험으로 인정된 성적도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7.> <개정 2013.12.11.>

② 삭제 <2021.1.13.>

③ 특별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의 경우 재학중에 취득한 자격증만 허용되며 동일한 자격증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인정 받을 수 없다.
<신설 2012.11.7.>

④ 매학기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특별학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졸업직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⑤ 특별학점 인정과목 및 자격증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1.7.>

제21조(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 ① 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은 학생이 교수와 해당전공(혹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개별 혹은 집단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목으로 학기 첫 주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장, 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은 매 학기 전공별 1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별 및 집단연구 기간은 1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기간 중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연구를 위한 토론 또는 세미나를 실시해야 한다.

④ 연구결과 보고서는 해당 학기 성적입력기간 안에 학부(과)장, 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은 졸업논문 지도를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의2(캡스톤디자인 교과목) 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학문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쉽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3학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12]

제22조(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현장실습학기제의 교과목 운영 및 학점 인정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8.18.]

[제목개정 2020.8.20., 2021.8.18.]

- 제22조의2(사회봉사 교과목)** ① 배재인의 섬김과 양보, 절제와 배려를 통한 인성함양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한다.
- ② 사회봉사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30시간을 1학점으로 하되 2학점까지 인정한다.
- ③ 사회봉사의 세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2.]

- 제22조3(산학협동연계교과목)** ①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은 정부기관 및 기업협의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개설한 교과목으로서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협약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산학협동연계 교과목은 전공, 교양 또는 자유선택으로 다음과 같이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6.11.9>

교과목	학점	총 시수	성적
산학협동연계교육 1	3	75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2	6	150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3	9	225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4	12	270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5	15	315시간 이상	P/F

- ③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은 운영 시점과 기간, 지역별 범위에 따라 학기제와 계절제로 구분하고 지역적으로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아래와 같다
- 1.

지역	학기 중	방학 중
국내	국내 학기제 산학협동연계교육	국내 계절제 산학협동연계교육
해외	해외 학기제 산학협동연계교육	해외 계절제 산학협동연계교육

2.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심화학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기제와 계절제 산학협동연계교과목에 대한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구분	운영시기
학기제	1, 2학기
계절제	하계, 동계방학

2. 산학협동연계교과목 학점은 학기제의 경우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계절제의 경우 해당 계절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3. 산학협동연계 교과목 학점과 성적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4. 산학협동연계교육교과목의 경우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한다.

5. 산학협동연계교육 대상학년은 산학협력연계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6. 기타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산학협동 연계교육교과목 신청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동연계교육의 신청은 해당부서에서 학생들의 교육계획서, 협약서, 교육과정표 등을 사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교육계획서 및 교육일지는 주관부서에서 별도 보관한다.

2. 산학협동연계 교과목의 교육 종료 후 그 결과 (출(석)부, 성적평가표)를 1주 이내에 주관부서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8]

제23조(단기 해외연수 학점) ① 자매결연대학 또는 본교에서 인정하는 해외대학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소속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② 어학연수, 문화체험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8.6.20.>

구분	학점	이수 시간
어학연수	1	30시간 ~ 60시간 미만
	2	60시간 이상
문화체험	1	60시간 ~ 120시간 미만
	2	120시간 이상

③ 1회의 어학연수나 문화체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각 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학연수나 문화체험은 통산 각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인문사회대학의 외국어 관련 학과의 어학연수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07.7.6., 개정 2008.1. 31., 2012.4.18., 2018.6.20., 2020. 1.16.>

④ 단기해외연수 교과목은 계절학기로 운영하며, 성적은 Pass 또는 Fail로 구분한다.<개정 2008.1.31, 2011.8.24>

⑤ 단기해외연수는 각 단과대학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각 단과대학별로 따로 정한다.

제23조의2(해외이수학점인정) ①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생이 해외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대학의 학기당 취득학점 허용범위 내에서 교내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과장(전공주임)은 교수회의에서 과목을 심사하여 인정할 전공, 교양, 자유선택 학점을 확정한 후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교에서 인정한 타 대학 이수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전공, 교양,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총 학점을 기재하고, 개별 과목 및 성적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생의 해외연수 기간동안 개설된 전공 필수과목은 이수 면제 한다.

⑤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생의 해외연수 기간 동안 문화체험의 학점 이수 기준은 제 23조 ②항 및 ③항을 따르며, 1개 학기의 문화체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6.20.>

[본조신설 2009.1.29]

제23조의3(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①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최대 9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성적 및 학점으로 한다.<개정 2014.8.27., 2020.1.16.>>

③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23조의4(국내·외 기관 실습 학점 인정) ① 학칙 제32조의2 제6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전공과 연계한 외부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교과목	학점	이수시간	성적	비고
전공직무체험1,2	3	160시간 이상	P/F	
전공직무체험3,4	6	320시간 이상	P/F	
전공직무체험5	15	3학년 600시간(15주) 이상	P/F	
전공직무체험6	15	4학년 600시간(15주) 이상	P/F	

② 제1항의 전공직무체험 교과목의 학점은 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
 ③ 학점인정심의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단과대학 부학장, 기획부처장, 교무부처장, 학사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8.18.]

제24조(특별강의) 교양과 전문 학술의 특별강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강의 제목, 강사의 직 및 성명, 일시, 강의시간 수, 장소, 대상, 강사료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교외교육) ① 교외교육의 계획은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② 교외교육은 강의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강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외교육은 실시 2주전까지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수업

제1절 학사력

제26조(학사력) ① 교무처장은 다음 학년도 개시 2개월 이전에 학사력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사력에는 학기구분, 수업일수, 방학, 공휴일, 중간·기말시험 및 기타 중요행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학사력에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수업시간 편성

제27조(개설교과목 결정) ① 교양과목은 주시경교양대학 교학팀, 교직과목은 교직부, 전공과목은 소속대학 및 학부(과)에서 주관하되,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개정 2012.11.7., 2021.1.13.>

② 삭제<2012.11.7.>

③ 학부(과)별 개설과목은 48학점 이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62학점, 간호학과는 55학점 이내로 한다. 단,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전공직무체험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교직 교과목, 전공의이해, 전공과진로, 꿈드림설계 교과목은 개설학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9, 2011.12.12, 2012.11.7., 2013.2.19., 2013.12.11., 2016.9.7., 2017.9.13., 2018.11.14., 2020.1.16., 2020.8.20., 2021.8.18.>

④ 개설교과목의 제출 시에는 해당과목의 담당교수를 기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온라인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1.7.>

제28조(수업시간표 작성) ① 교무처장은 개설교과목의 수업시간표를 수강신청 1주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21.1.13.>

② 삭제 <2012.11.7.>

③ 삭제 <2012.11.7.>

④ 확정된 수업시간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부득이 변경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수업시간 편성원칙) ① 동일과목의 수업은 실험, 실습, 실기 및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시간 이상의 연속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

② 전임교원은 주당 4일 이상 출강하도록 배정한다. 단, 전임교원이 4일 이상 출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폐강) ① 교양교과목은 30명, 외국어회화 교양교과목은 15명, 전공과목은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29., 2011.12.12., 2012.11.7. 2015.6.10>

② 삭제 <2012.11.7.>

③ Pass/Fail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31, 2010.1.27, 2011.8.24, 2011.12.12., 2012.11.7>

④ 폐강여부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학급규모의 설정원칙) ① 수강규모는 교양은 60명, 외국어회화 교과목은 20명, 전공은 45명을 기준으로 학급규모를 설정하되, 실험실습관련 교과목은 실험실습실 수용규모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에 의한 학점인정교과목은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12.4.18., 2012.11.7. 2015.6.10., 2020.1.16.>

② 수강인원이 수강규모를 초과할 경우 분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4.18>

제3절 수강신청

제32조(수강신청시기 및 절차) ① 재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인터넷 신청 또는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절차에 따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이 허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강신청) ① 매 학기 당 12학점 이상 18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 <개정 2008.9.10, 2009.1.29, 2010.6.16., 2011.8.24, 2012.4.18., 2013.2.19., 2013.12.11., 2016.9.7., 2016.11.9., 2020.1.16., 2021.8.18., 2022.1.25.>

구 분	졸업학점이 130, 132, 160학점 인 경우	졸업학점이 140, 142학점인 경우	
		1, 2학년	3, 4학년
일반 학생	18학점 까지	18학점 까지	21학점 까지
성적 우수자	21학점 까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20이상인자)	21학점 까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20이상인자)	24학점 까지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20이상인자)
학사 경고자	15학점 까지	15학점 까지	18학점 까지

단,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에 1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1학점을 초과신청할 수 있다.
 「디자인컴퓨테이션 AI융합전공」 이수학생은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채플 1,2,3,4는 수강신청 최대학점 제한에 예외로 한다.

② 최종학기(8학기, 5년제 건축학 전공은 10학기)에는 신청학점을 최소한 6학점으로 한다.<신설 2010.6.16>

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0.6.16.>

④ 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나,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6.16.>

⑤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개정 2010.6.16.>

⑥ 수강신청 상한선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준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때에는 자유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으로 삭제한다.<개정 2009.1.29., 2010.6.16.>

⑦ 학사경고자는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 및 대학에서 지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6.16., 2013.8.22.>

⑧ 교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소속 학과의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가 수강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9.2.15.>

⑨ 불가피하게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2.15.>

제33조의2(온라인 교과목의 수강신청) 온라인 교과목은 학기당 6학점, 총 3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난 및 감염병 등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 총장이 인정하는 타 대학 공동교육과정 이수자 및 장애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18., 2012. 11.7., 2020.8.20., 2021.1.13., 2022.1.25.>

[본조신설 2010.6.16.]

제33조의3(강의평가) ①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강의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학은 평가 결과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33조의4(재수강) ① 학생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한 학기에 6학점 이내, 재학기간 중 36학점까지 재수강을 신청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동일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이상 등급으로 평가 받은 교과목, Pass/Fail 교과목으로 Pass된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다.
② 재수강은 과목별 2회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0.8.20.]

제34조(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교과목이 폐강되었거나 강의시간 변경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에는 학기 초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에 해당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강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

다.

- ③ 학기 개시 후 일반 휴학자(중간고사 전에 군입대 휴학자 포함)의 수강신청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제35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수강철회원을 해당과목 담당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다른 교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의 철회로 인하여 이수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단, 최종 학기인 경우 6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0.10.13>

-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는 W(Withdraw)로 기재한다.

- ④ 수강과목을 철회 후 이수 신청 학점이 1~3학년은 15학점, 4학년은 12학점 미만일 경우에는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6조 삭제<2010.1.27>

제4절 강의 및 수업진행

제37조(수업계획서) ① 강의를 담당하는 모든 교원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Web 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 ② 삭제 <2013.12.11.>

제38조(전임교원의 책임학점) ①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일반대학원 강의(수강인원이 2명 이상인 강좌에 한하여 매학기 3학점 이내만 인정)를 포함한 별지 5와 같다.<개정 2007. 7. 6., 2011.12.12., 2012.4.18., 2012.11.7., 2013.12.11>

- ② 삭제 <2013.12.11.>

- ③ 삭제 <2013.12.11.>

- ④ 삭제 <2013.12.11.>

- ⑤ 제1항의 책임학점에 미달되는 전임교원의 경우 그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12.11.7., 2013.12.11>

⑥ 보직을 맡은 전임교원, 외국어교육중심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9.1.29., 2012.11.7>

⑦ 삭제<2012.11.7.>

⑧ 전임교원 책임학점의 신설 및 변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신설 2013.12.11.>

제39조 삭제 <2019.6.26.>

제40조(외부출강 및 수학) 전임교원이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및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2주전까지는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휴강과 보강) ① 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강을 하게 될 경우 대학장에게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보강한 후 보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1.14.>

② 공휴일, 개교기념일로 인한 휴강은 지정된 기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4.>

③ 보강은 보강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되 휴강 및 보강계획을 학생들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4.>

제42조(출석 및 결석) ①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을 경유 각 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지각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③ 삭제<2008.9.10>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직계가족(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 출석으로 인정하며, 배우자 및 자녀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5일, 외조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3일간 인정한다. <개정 2018.11.14.>

2. 병사관계(징병검사)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 통지서가 있을 때에 1일간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11.14.>
3.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여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4. 학부(과)의 학술답사 여행에 참가한 학생은 해당 학부(과)장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5.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 인정한다.
6.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 결석은 병원에서 인정하는 기간 중 4주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졸업 예정 학기에 취업, 창업, 인턴, 본교가 인정하는 교육으로 정상적인 수업참여가 불가할 경우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국가인증을 받는 건축학과, 간호학과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11.9., 개정 2018.6.20., 2022.1.25.>
8.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8.11.14.>
9.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은 체육부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11.14.>
10. 재난 및 감염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8.20.>
11. 본인이 출산한 경우 30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8.20.>

제5장 시험 및 성적

제1절 시험

제43조(시험의 실시) ①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졸업종합시험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시험은 학기말시험으로 하며, 학기말시험은 총수업 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한 학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온라인에 의한 학점 인정 교과목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9.10, 2011.12.12>
2. 수시시험은 과제학습,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

수 책임하에 행한다.

3. 교무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을 과할 수 있다.

4. 재시험은 성적을 D0 이상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과할 수 있다. 다만, 정기시험에 불응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병역,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 대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24>

제44조(시험관리) ① 모든 시험은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책임하에 출제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답안지 및 성적평가의 근거서류는 담당교수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1.31., 2019.2.15.>

제45조(시험중 부정행위자의 처리) ①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감독교수는 감독보고서에 부정행위 내용을 작성 날인하고 부정행위자의 답안지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이를 입학취업처장 및 단과 대학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의뢰한다. <개정 2009.6.17, 2011.8.24>

③ 단과 대학장은 학부(과)장 및 담당과목 교수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④ 교무처는 징계내용을 학적부에 기록하고,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부정행위 교과목만 "F"로 처리 하고, 무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학기 전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⑤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신설 2020.8.20.>

제45조의2(부정행위의 종류) 면학분위기나 학습평가의 엄정함을 저해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시험장 이외에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한 경우

2.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종이 및 기타 개인소지품에 준하는 곳에 사전 기록해 온 경우
3. 벽면, 책상 위에 기록한 것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시험 감독원의 지시에 반항한 경우
5. 대리로 출석이나 시험에 응시를 한 학생과 이를 응시하게 한 학생의 경우
6. 비공개 원칙의 퀴즈, 과제, 시험 문제나 답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공개한 경우
7. 학번(ID, Password)을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8. 해킹 등으로 본교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이상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9. 출석이나 시험응시에 동일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함)
10. 온라인시험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11. 중복 로그인 하는 경우
12.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경우
1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본조신설 2020.8.20.]

제2절 성적 및 학점

제46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	4.50	C ⁰	2.00
A ⁰	4.00	D ⁺	1.50
B ⁺	3.50	D ⁰	1.00
B ⁰	3.00	P	불계
C ⁺	2.50	F	0.00

제47조(평점평균의 산출) ① 평점평균의 산출은 [(교과목별 평점×학점)의 총합]÷수강신청 총학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② Pass/Fail로 평가되는 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학점수로는 인정한다.<개정 2011.8.24>

③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기준은 별지 2와 같다.<개정 2007.7.6., 2013.8.22>

제48조(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최대 “A” 까지 취득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교과목의 이전 취득 학점 및 성적은 무효로 한다.<개정 2007.7.6, 2014.2.4., 2014.8.27., 2016.11.9., 2017.6.26., 2020. 8.20.>

③ 재수강한 교과목 중 이미 취득한 성적의 무효로 인한 그 당해 학기의 학사경고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④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 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학과장이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9.2.15.>

제49조(등급별 분포비율) ① 학업성적의 등급별 분포 비율은 다음 기준에 준 한다.

등급	비율	
	교양	전공
A ⁺ , A ⁰	0 ~ 25%	0 ~ 30%
B ⁰ 이상	0 ~ 70%	0 ~ 70%
C+, 이하	30% 이상	30% 이상

② 등급별 분포비율 예외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A의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교직과목(전공 교과교육영역과목 포함)
2. 군사학과목

3. 실험실습 교과목 <개정 2020.8.20.>

4. 4학년 전공교과목(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 전공은 5학년 전공교과목)

5. 수강인원 10명 미만 교과목

6. 그 외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전문개정 2018.11.14.]

③ 천재지변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5.13., 2020.8.20.>

1. 삭제 <2020.8.20.>

2. 삭제 <2020.8.20.>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8.20.>

1. 캡스톤디자인

2. 국고지원사업으로 개설되는 10명 미만의 전공 교과목

제50조(성적처리) ① 학기 중 수업일수 1/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고사에 응시한 후 입대 휴학한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 및 과제물 성적으로 100% 대체할 수 있다.

② 총장이 인정한 공식행사로 인하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 어느 하나를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번의 정기시험 성적으로 100%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두 번의 정기시험 중 그 한번을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불응 사유가 승인되면 한 번의 정기시험 성적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목의 성적은 취소한다.

1. 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수업일수 2/3 이상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 신청한 모든 과목의 성적

2. 삭제<2008.9.10>

3.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교과목의 성적

4.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5.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6. 행정착오에 의한 성적<개정 2011.12.12.>
7.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였을 경우 담당교수가 수강 미신고, 성적 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항을 위반한 과목의 성적<신설 2019.2.15.>

제50조 1 (성적확인 및 발송) ① 매 학기 성적표는 세부요소별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열람·확인 한다.<개정 2017.6.26>
② 학사경고자의 성적표는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학생보호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
[본조신설 2015.1.7.]

제51조(성적평가표 제출) ①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을 산출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간 성적 공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성적평가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개정 2011.8.24., 2012.11.7., 2020.8.20.>
② 삭제<2011.8.24>

제52조(성적이의 신청 및 정정) ① 성적정정은 성적 공람기간에 해당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성적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최종 성적평가표 제출 후에는 성적정정을 불허한다. <개정 2017.6.26., 2018.11.14.>
② 성적정정을 요구 받은 해당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재심하여, 성적 공람기간 중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용여부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6., 2018.11.14.>
③ 성적이의신청 기간 외에는 성적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재착오 또는 누락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14.>

제53조(학점포기) ① 삭제 <2014.2.4.>
② 삭제 <2014.2.4.>
③ 삭제 <2014.2.4.>
④ 삭제 <2014.2.4.>

제54조(학기별 성적순위) 학기별 성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2. 해당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제1전공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제1전공의 취득학점이 많은 자
5. 직전학기 성적을 위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직전학기 성적으로도 처리 안 될 경우 그 전학기를 적용한다. 단 직전학기의 성적이 없는 1학년의 경우 입학성적을 적용한다.<신설 2008.1.31>

제55조(학사경고) ①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단, 8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등록 후 받은 성적에 대하여는 학사경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7.>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시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33 조 제⑦항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7.>

제6장 휴학 및 복학

제56조(일반휴학) ① 일반휴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허용한다.

1. 가정사정, 질병, 상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창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12.11., 2018.2.21., 2018.11.14.>
 2. 등록을 마친 후 예기치 않았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는 경우
 3. 신입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4까지 허용할 수 있다.
- ② 일반휴학은 학기개시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2.21.>
- ③ 일반휴학 신청자는 휴학원서를 작성한 후 학부(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개정 2009.6.17., 2018.2.21>

- 제57조(군입대 휴학)** ①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고 징집, 소집,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입대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영일 1주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복무를 위한 교육기간도 군 휴학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8.2.21.>>
- ② 군입대 휴학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대휴학원서 1부 <개정 2016.7.13.>
 2.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1부 <개정 2016.7.13.>
- ③ 군입대 휴학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7.,2016.7.13.>
1. 휴학원서를 작성한 후 경유처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2.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귀향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해당학기 개시 전까지 휴학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일반휴학중 군입대 할 경우에는 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3.>

- 제58조(복학)** ① 일반휴학을 한 후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군입대 휴학 후 제대한 경우에는 복학을 하여야 한다. 만약 복학대상학생이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복학으로 제적된다.
- ②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학 완료해야 한다.<개정 2018.2.21.>
- ③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6.17., 2018.2.21>
1. 복학신청
 2. 등록금 납부
 3. 수강신청
- ④ 일반휴학 후 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학취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17>

제7장 재입학

제59조(자격) 학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입학학기에 군입대, 질병, 상해로 인한 휴학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18.2.21>

제60조(신청 및 허가) ① 재입학하려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재입학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2018.2.21.>

③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부(과)의 동일 학년으로 허가 한다.<2018.2.21.>

④ 삭제<2010.1.27>

제61조(학년과 학점)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부(과) 및 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잔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62조(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 등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장 편입학

제63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되,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일반편입학의 경우 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이나 또는 재적했던 자인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매 학년초(또는 학기초) 전 학년도 1, 2학년의 모집 단위별 제적자 수만큼 3학년, 4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9. 10>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익년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매 학년초(또는 학기초) 3학년 전체 정원의 2% 이내와 해당모집 단위 정원의 4% 이내에 한하여 정원외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64조(일반 편입생의 학점인정 및 이수) ①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인정하고 남은 과정을 이수케 한다.<개정 2008.9.10, 2009.1.29, 2011.8.24, 2014.2.4>

구 분	졸업최소인정 학점이 130인 학부(과)	졸업최소인정 학점이 132인 학부(과)	졸업최소인정 학점이 140인 학부(과)	졸업최소인정 학점이 142인 학부(과)	건축학부 건축 학 전공 (5년제)
2학년 편입	33학점 까지	34학점 까지	35학점 까지	36학점 까지	32학점 까지
3학년 편입	65학점 까지	66학점 까지	70학점 까지	71학점 까지	64학점 까지
4학년 편입	98학점 까지	99학점 까지	105학점 까지	107학점 까지	-

② 전공과정은 학부(과)장, 교양과정 및 기타과정은 교무처장이 심사하고, 이를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를 인정한다.

③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공학점은 전적대학 이수과목 중 편입학 한 학부(과)의 1, 2, 3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편입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점으로만 표기한다.<개정 2008.9.10>

2. 교직학점은 전적대학 이수과목 중 본교에 개설된 교직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하고, 학점으로만 표기한다.<신설 2009.1.29>

3. 교양학점은 위 호의 인정과목을 제외한 과목을 인정하고 학점으로만 표기한다.<개정 2008.9.10>

4. 전적대학 이수과목의 학점이 본 교 교과목의 학점과 상이할 때에는 합산 또는 분리하여 인정할 수 있다.

5. 편입 학년 이전에 개설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은 이수 면제한다. 단,『기독교정신과 아펜젤러인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8.9.10., 2020.1.16.>

④ 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는 편입학한 학년의 학부(과)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입학한 이전에 개설된 교육과정이 변동되어 수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수 면제 할 수 있다.

⑤ 편입 이후 전공과정의 학점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학년 편입 단수전공자 : 전적대학 전공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45학점 이상(5년제

건축학 전공자는 123학점 이상, 간호학과는 98학점 이상)<개정 2008.9.10., 2018.6.20., 2020.1.16., 2021.8.18.>

2. 4학년 편입 단수전공자 : 전적대학 전공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신설 2008.9.10>

3. 다전공자 : 36학점 이상 <개정 2011.12.12., 2013.5.8, 2014.2.4>

4. 부전공자 : 18학점 이상 <개정 2011.12.12, 2014.2.4>

5. 교직과정 이수자 : 전적대학 전공교직인정과목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개정 2009.1.29, 2014.2.4>

제65조(학사 편입생의 학점인정기준) ① 학사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 이수교과 목에 대한 개별인정은 하지 않고 총 취득학점으로 졸업이수 학점의 1/2를 인정한다. 단,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으로 편입할 경우 64학점까지 인정한다.<개정 2011.8.24., 2020.1.16.>

② 학사 편입생의 교육과정 이수는 교양과정은 이수면제하고, 전공과정은 편입학한 학년의 학부(과) 전공교육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편입 이후의 전공필수과목은 전적대학에서의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간호교 육인증평가 기준 충족을 위해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기타 학사 편입생의 일반사항은 일반편입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편입학자의 학적부 기재방법)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이수 학점 중 본교에서 인정 한 학점은 교양 및 전공으로 구분하여 총 학점을 기재한다.

제9장 졸업

제67조(졸업자격) 졸업사정에 합격하여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1. 등록의 횟수

가. 신입학자 : 8학기 이상

나. 2학년 1학기 편입학생 : 6학기 이상

- 다. 2학년 2학기 편입학생 : 5학기 이상
- 라. 3학년 편입학생 : 4학기 이상
- 마. 4학년 편입학생 : 2학기 이상<신설 2009.1.29>
- 바. 학사편입학생 : 4학기 이상
- 사. 학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조기졸업자 및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 전공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8.24>
2. 입학연도별 학부(과) 교육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졸업소요 최저 이수 학점 (별지 3)을 취득한 자로 한다.<개정 2008.1.31, 2010.10.13, 2011.1.26, 2011.8.24, 2011.12.12>

제68조(조기졸업) ① 학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조기 졸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학기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로서 6학기 내지 7학기 말까지 제67조 2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총 성적 평점 평균이 4.25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0.1.27>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기졸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학기 정해진 기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0.>

③ 편(재)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단,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연계교육 과정에 의해 편입한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제69조(졸업성적의 순위) 졸업성적의 순위는 전.후기 졸업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총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한다.
2.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총 취득학점이 많은 순에 따라 정한다.
3. 총 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전공의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한다.
4. 제1전공의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전공의 취득학점이 많은 순에 따라 정한다.

제70조 삭제<2019.2.15.>

제70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해당 학기말 성적공람기간 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로 하고, 취소신청은 졸업사정 2일전까지로 하며, 이후로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이 수학을 계속할 경우에는 9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고, 이미 졸업학점으로 인정된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으며, 학칙시행세칙(Ⅰ) 제4조에 의거하여 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되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취득한 성적을 포함한 추가적인 졸업자격 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할 수 없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이 취업 등의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당해 학기 졸업신청으로 간주한다.

⑦ 수강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에게 학교 시설 이용 및 학적 보유에 따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2.15.]

[본조신설 2011.8.24.]

제10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71조(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① 학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6>

② 정정사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6>

1. 개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2. 국적변경: 국내거소사실증명 또는 국적법에 따른 국적관련증명서

3. 보호자의 주소가 변경: 보호자 기준의 주민등록표등본

제11장 제 증명 발급

제72조(제 증명 발급) ① 본교에 재학, 제적, 수료 또는 졸업한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제 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제정 학칙시행세칙(Ⅰ)은 2007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 제①항의 적용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본 학칙시행세칙(Ⅰ)의 제정에 따라 본 학칙시행세칙(Ⅰ) 시행일로 부터 학사에 관한 내규, 교육과정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단, 2007년 1월 16일 이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년도 학사에 관한 내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07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②항의 등록금 반환 기준은 2007년 3월 23일 부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 제1항, 제4항, 제27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64조 제1항, 제5항 5호, 제67조 제2호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0학년도 2학년, 2011학년도 3학년,

2012학년도 4학년 편입생부터 한다.

2. (2009~2012 신(新)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2005~2008 교육과정과 2009~2012 교육과정에서 공통으로 개설된 필수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공통으로 개설되지 않은 필수 교과목은 이수 면제한다. (교양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에 동일하게 적용)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아펜젤러국제학부의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 제1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2009~2012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009학년도 이후의 신(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또 다른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을 복수전공할 때 제1전공 최저 이수학점은 62(설계 18포함)로 적용한다.
3. (경과조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자가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2전공을 위한 최저 이수학점은 2008학년도 이후의 신(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3조 제2항은 2008학년도 이전의 신(편)입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8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53조 제1항은 2010년 8월 30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3. (경과조치)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 폐지에 따른 변경은 2008학년도 이후의 신(편) 입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지 3의 공과대학 건축학 전공에 대한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2,3,4호, 제4항 제1, 2호,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 제64조 제1항, 제 65조 제1항, 제67조 제1호의 사, 2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학부(과)별 전공과목 개설학점에서 가정교육과는 2013학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126학점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9조(등급별 분포비율)는 2014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3조(학점포기)는 폐지하나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에 한하여 2013-2학기이전 성적에 대하여 6학점까지 학점포기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I)은 2016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하나 제42조 ④항의 7호는 2016년 8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단, 제64조(일반 편입생의 학점인정 및 이수) ⑤항 1에서 5년제 건축학 전공자의 123학점 이상에 대한 적용은 2019학년도 편입생부터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학업연장자의 등록)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별지 5] 전임교원의 책임학점표의 보직명칭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6.> (배재대학교 학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하워드대학, 서재필대학, 아펜젤러대학, 김소월대학 재적생은 2020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제에 따라 인문사회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AI·SW창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6.>
②~⑬ <생략>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3조의2, 제42조④항10호, 제49조③항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성과관리센터장, 중앙도서관장, 정보관리센터장의 책임학점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생성장센터장의 책임학점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지3]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21. 2. 3.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3항제2호, 제22조, 제23조의4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 제7조의 경우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소급적용) 제64조제5항제1호의 경우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I)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지 5]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강의시수 인정은 시행일 이후 임용계약 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삭제 2011.12.12>

[별지 2]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기준 (4.5 만점기준) <개정 2013.8.22.>

등급	평점평균	환산점수	등급	평점평균	환산점수
A+	4.5	100.0	C+	2.65~2.74	79.0
	4.45~4.49	99.0		2.55~2.64	78.0
	4.40~4.44	98.0		2.45~2.54	77.0
	4.35~4.39	97.0		2.35~2.44	76.0
	4.30~4.34	96.0		2.25~2.34	75.0
	4.25~4.29	95.0		2.15~2.24	74.0
A	4.15~4.24	94.0	C	2.05~2.14	73.0
	4.05~4.14	93.0		1.95~2.04	72.0
	3.95~4.04	92.0		1.85~1.94	71.0
	3.85~3.94	91.0		1.75~1.84	70.0
	3.75~3.84	90.0		1.65~1.74	69.0
B+	3.65~3.74	89.0	D+	1.55~1.64	68.0
	3.55~3.64	88.0		1.45~1.54	67.0
	3.45~3.54	87.0		1.35~1.44	66.0
	3.35~3.44	86.0		1.25~1.34	65.0
	3.25~3.34	85.0		1.15~1.24	64.0
B	3.15~3.24	84.0	D	1.05~1.14	63.0
	3.05~3.14	83.0		0.95~1.04	62.0
	2.95~3.04	82.0		0.85~0.94	61.0
	2.85~2.94	81.0		0.75~0.84	60.0
	2.75~2.84	80.0	F	0.75미만	0.0

[별지 2-1]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기준 (4.0 만점 기준)

등급	평점평균	환산점수	등급	평점평균	환산점수
A	4.00	100.0	D	1.49~1.45	69.0
	3.99~3.95	99.0		1.44~1.40	68.0
	3.94~3.90	98.0		1.39~1.35	67.0
	3.89~3.85	97.0		1.34~1.30	66.0
	3.84~3.80	96.0		1.29~1.25	65.0
	3.79~3.75	95.0		1.24~1.20	64.0
	3.74~3.70	94.0		1.19~1.15	63.0
	3.69~3.65	93.0		1.14~1.10	62.0
	3.64~3.60	92.0		1.09~1.05	61.0
	3.59~3.55	91.0		1.04~1.00	60.0
	3.54~3.50	90.0			
	3.49~3.45	89.5		0.99~0.95	59.5
	3.44~3.40	89.0		0.94~0.90	59.0
	3.39~3.35	88.5		0.89~0.85	58.5
B	3.34~3.30	88.0	F	0.84~0.80	58.0
	3.29~3.25	87.5		0.79~0.75	57.5
	3.24~3.20	87.0		0.74~0.70	57.0
	3.19~3.15	86.5		0.69~0.65	56.5
	3.14~3.10	86.0		0.64~0.60	56.0
	3.09~3.05	85.5		0.59~0.55	55.5
	3.04~3.00	85.0		0.54~0.50	55.0
	2.99~2.95	84.5		0.49~0.45	54.5
	2.94~2.90	84.0		0.44~0.40	54.0
	2.89~2.85	83.5		0.39~0.35	53.5
	2.84~2.80	83.0		0.34~0.30	53.0
	2.79~2.75	82.5		0.29~0.25	52.5
	2.74~2.70	82.0		0.24~0.20	52.0
	2.69~2.65	81.5		0.19~0.15	51.5
C	2.64~2.60	81.0		0.14~0.10	51.0
	2.59~2.55	80.5		0.09~0.05	50.5
	2.54~2.50	80.0		0.04~0.00	50.0
	2.49~2.45	79.5			
	2.44~2.40	79.0			
	2.39~2.35	78.5			
	2.34~2.30	78.0			
	2.29~2.25	77.5			
	2.24~2.20	77.0			
	2.19~2.15	76.5			
	2.14~2.10	76.0			
	2.09~2.05	75.5			
	2.04~2.00	75.0			
	1.99~1.95	74.5			
	1.94~1.90	74.0			
	1.89~1.85	73.5			
	1.84~1.80	73.0			
	1.79~1.75	72.5			
	1.74~1.70	72.0			
	1.69~1.65	71.5			
	1.64~1.60	71.0			
	1.59~1.55	70.5			
	1.54~1.50	70.0			

[별지3]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개정 2008.1.31, 2009.1.29, 2011.1.26, 2011.8.24, 2011.12.12.,
2012.11.7., 2013.2.19., 2013.5.8., 2013.12.11., 2014.2.4., 2015.6.10., 2016.9.9.,
2018.6.20., 2020.1.16., 2020.5.13., 2021.1.13., 2021.8.18., 2022.1.25.>

1. 2022-2025학번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단과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교양선택	계	전공과정						졸업필적점			
			교양필수	교양필수선택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의사소통영역	글로벌영역	정보문해영역	미래소양영역	균형학문영역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제1전공	제2전공	제1전공	부전공			
융합대학	AI 소프트웨어 공학부	컴퓨터공학	공학								54 이상	78 이상								
		인터넷프로그래밍	공학																	
		정보보안학	공학																	
		게임공학	공학																	
		모바일프로그래밍	공학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과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과	공학																	
		신소재공학과	공학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5년제】		공학	13	3	6	2	-	6	-	30	108 이하	15 이상	123 이상	114	36	123	18	160	
	실내건축학과		공학	13	3	6	2	3	9	-	36	24 이하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조경학과		공학																	
	아트엔 웹툰학부	아트앤웹툰	예· 체능																	
		게임애니메이션	예· 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예· 체능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 사회																	
	의류패션학과		자연 과학																	
	공연예술학과		예· 체능																	
	레저스포츠학과		예· 체능																	
	뷰티케어학과		예· 체능																	

- 교양필수(13학점): 채플(1, 2, 3, 4) 각 0.5학점(2학점),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 (2학점), 배재인의대학설계(1, 2) 각 1학점(2학점), 글쓰기와읽기(3학점), AI이해및활용(2학점), 오픈소스SW(2학점)
- 의사소통영역(3학점): 글쓰기와토론 영역에서 택 1과목(3학점)
- 글로벌영역(6학점): 언어 영역에서 택 1과목(3학점), 세계시민 영역에서 택 1과목(3학점)
- 정보문해영역(2학점): 미래와기술 영역에서 택 1과목(2학점)
- 미래소양영역(3학점): 비전설계 영역에서 택 1과목(3학점)

- *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5년제) 및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는 ‘비전설계’ 영역 면제
- 균형학문영역(9학점): 인문과예술 영역에서 택 1과목(3학점), 사회와문화 영역에서 택 1과목(3학점), 자연과과학 영역에서 택 1과목(3학점)

*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5년제) 및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는 ‘자연과과학’ 영역 면제

2. 2020-2021학번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단과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교양선택	계	전공과정					졸업최저이수학점			
			교양필수선택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교양필수 ₁	글로벌의사소통영역 ₂	취·창업실무영역 ₃	균형기초학문영역 ₄	AI·SW융용영역 ₅	심화글쓰기영역 ₆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제1전공	제2전공	제1전공	부전공		
의용합대학										이상	이상							
	정보통신공학과		공학							54 이상	78 이상							
	컴퓨터공학과		공학							42 이상	66 이상							
	사이버보안학과		공학							108 이하	15 이상	123 이상	114	36	123	18	160	
	게임공학과		공학							24 이하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과		공학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실내건축	공학															
		건축학	공학															
	조경학과		공학															
	아트앤페이지과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예·체능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사회															
	의류패션학과		자연과학															
	실용음악과		예·체능															
	피아노과		예·체능															

- 교양필수: 채플(1, 2, 3, 4)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2학점), 기초글쓰기(2학점), 인성리더십(1학점), 감성리더십(1학점), 배재인의대학설계(1, 2), AI이해및활용(2학점), 오픈소스SW(2학점)
- 글로벌의사소통영역: 1과 2로 편성된 의사소통영어, 의사소통독일어, 의사소통프랑스어, 의사소통스페인어, 의사소통러시아어, 의사소통일본어, 의사소통중국어, 의사소통아랍어 각 영역에서 택 1과목(4학점)
- 취·창업실무영역: 택 1과목(2학점)
- 균형기초학문교양영역: 소속 단과대학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택 2과목(4학점)

5. AI·SW응용영역: 택 1과목(2학점)

6. 심화글쓰기영역: 택 1과목(2학점)

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교양 필수 ₁	교양필수선택				교양 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글로벌 의사소통 영역 ₂	균형 기초 학문 영역	AI· SW 응용 영역 ₃	심화 글 쓰기 영역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부 전공	
대덕밸리 캠퍼스	생명공학과	자연	18	4	-	2	-	-	24	24 이하	54 이상	78 이상	39	36	54	18	130

1. 교양필수: 채플(1, 2, 3, 4)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2학점), 기초글쓰기(2학점), 인성리더십(1학점), 감성리더십(1학점), 배재인의대학설계(1, 2), AI이해및활용(2학점), 오픈소스SW(2학점)
 - 취창업영역: 지식재산권개론(2학점), 창업과기업가정신(2학점)
 - 실무영역: 컴퓨터활용과MOS(2학점), 이미지메이킹(2학점)
 2. 글로벌의사소통영역: 1과 2로 편성된 의사소통영어, 의사소통독일어, 의사소통프랑스어, 의사소통스페인어, 의사소통러시아어, 의사소통일본어, 의사소통중국어, 의사소통아랍어 각 영역에서 택 1과목(4학점)
 3. AI·SW응용영역: 택 1과목(2학점)

3. 2018-2019학번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교양필수선택						교양 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글로벌 의사 소통 영역 ¹	취· 창업 실무 영역 ²	균형 기초 학문 영역 ⁴	창의 와소 프트 웨어 영역 ⁵	심화 글쓰기 영역 ⁶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부 전공		
	의류패션학과																	
	문화창조융합계열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 조경학과	공학																
	문화창조융합계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공학									108 이하	15 이상	123이 상	114	36	123	18	160
	문화창조융합계열 미술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과 서예음악과 피아노과	예술									24 이하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 교양필수: 채플(1, 2, 3, 4)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2학점), 기초글쓰기(2학점), 배재리더십(1, 2, 3, 4), 배재인의대학설계(1, 2)
- 글로벌의사소통영역: 1과 2로 편성된 의사소통영어, 의사소통독일어, 의사소통프랑스어, 의사소통스페인어, 의사소통러시아어, 의사소통일본어, 의사소통중국어, 의사소통아랍어 각 영역에서 택 1과목(4학점)
- 취·창업실무영역: 택 2과목(4학점)
- 균형기초학문교양영역: 소속 단과대학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택 2과목(4학점)
-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 택 1과목(2학점)
- 심화글쓰기영역: 택 1과목(2학점)

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교양 필수 ¹	교양필수선택					교양 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글로벌 의사 소통 영역 ²	균형기 초학문 영역 ⁴	창의와소 프트웨어 영역 ⁵	심화글 쓰기영역 ⁶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부 전공	
대덕밸리 캠퍼스	생명공학과	자연	20	4	-	-	-	-	24	24 이하	54 이상	78 이상	39	36	54	18	130

- 교양필수: 채플(1, 2, 3, 4)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2학점), 기초글쓰기(2학점), 인성리더십(1학점), 감성리더십(1학점), 소통리더십(1학점), 수행리더십(1학점), 배재인의대학설계(1, 2)
 - 취창업영역: 지식재산권개론(2학점), 창업과기업가정신(2학점), 핵심취업전략(2학점)
 - 실무영역: 4차산업혁명과빅데이터(2학점), 컴퓨터활용과MOS(2학점), 이미지메이킹(2학점)

2. 글로벌의사소통영역: 1과 2로 편성된 의사소통영어, 의사소통독일어, 의사소통프랑스어, 의사소통스페인어, 의사소통러시아어, 의사소통일본어, 의사소통중국어, 의사소통아랍어 각 영역에서 택 1과목(4학점)

4. 2014-2017학번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공통교양			계열교 양	교양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교양필수 ¹	언어영역 ²	자기계발		교양필수선택		전공필수	계열기초전공	전공선택	소계	제1전공	제2전공						
하드학 위대	글로벌언어문화계열 한국어문화과 영어영문학과	인문	10	4	-	4	-	18	18 이하	6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글로벌언어비지니스계열 TESOL·비지니스영어학과 스페イン·중남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러시아학과 한공운항학과		10	4	-	4	-	18												
	복지·힐링계열 심리철학상담학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		10	4	-	4	-	18	18 이하	6	42 이상									
	교육계열 유아교육과	인문	10	4	-	4	-	18	24 이하	0	42 이상									
서 재 대 필 학	교육계열 가정교육과	자연	10	4	-	4	-	18												
	경영계열 경영학과 무역학과 전자상거래학과 중소기업컨설팅학과	사회	10	4	-	4	-	18	18 이하	6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사회계열 정치언론안보학과 행정학과 공공정책학과 공무원법학과		10	4	-	4	-	18	18 이하	6	42 이상									
	바이오계열 생물의약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자연	10	4	-	4	0~6	18~ 24	18 이하	6	42 이상									
아 펜 러 대학	바이오계열 원예조경학부		10	4	-	4	0~6	18~ 24	18 이하	6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IT융복합계열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컴퓨터수학과	공학	10	4	-	4	0~6	18~ 24	18 이하	6	42 이상									
	IT융복합계열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10	4	-	4	0~6	18~ 24	18 이하	6	42 이상									
	IT융복합계열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공학	10	4	-	4	0~6	18~ 24	24 이하	0	42 이상									
	나노공학계열 신소재공학과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공학	10	4	-	4	0~6	18~ 24	18 이하	6	42 이상									
	나노공학계열 제약공학과		10	4	-	4	0~6	18~ 24	18 이하	6	42 이상									

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공통교양			계열교 양		교양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교양필수 ¹	언어영역 ²	자기계발영역 ³	교양필수선택	교양선택			전공필수	계열기초전공	전공선택	소계	제1전공	제2전공	제1전공	부전공	
김 월 학	보건의료계열 간호학과	자연	10	4	-	4	3	4	25 이상	67 이하	0	43 이상	110 이상				140	
	관광계열 관광·이벤트경영학과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여가서비스경영학과	사회	10	4	-	4	-		18	18 이하	6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관광계열 외식경영학과	자연	10	4	-	4	-		18	24 이하	0	42 이상						
	관광계열 레저스포츠학과	예체	10	4	-	4	-		18	24 이하	0	42 이상						
	문화창조융합계열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	10	4	-	4	-		18	24 이하	0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문화창조융합계열 의류패션학과	자연	10	4	-	4	-		18		0	42 이상						
	문화창조융합계열 실내건축학전공	공학	10	4	-	4	-		18	18 이하	12	36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문화창조융합계열 사진영상디자인학과 미술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과 실용음악과 피아노과	예능	10	4	-	4	-		18	24 이하	0	42 이상	66 이상					
	문화창조융합계열 건축학전공	공학	10	4	-	4	-		18	96 이하	12	15 이상	123 이상	114	36	123	18	160

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공통 교양		산학융복합 계열교양			교양필수	계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교양 필수 ¹	교필 선택	언어 영역 ²	자기 계발 영역 ³	실무영 역 ⁴	창업영 역 ⁵		전공필수	계열 선택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대덕 밸리 캠퍼 스	생명공학과	자연	10	4	-	6	6	31	24 이하	0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 주 1. 교양필수 : 채플(1,2,3,4) 기독교와 현대사회(2학점), 사고와 표현(2학점), 사이버실용영어1(1학점), 사이버실용영어2(1학점), 배재리더십(1,2,3,4)
2. 언어영역 : 1과 2로 편성된 기초영어, 기초독일어, 기초프랑스어, 기초스페인어, 기초러시아어, 기초일본어, 기초중국어, 기초베트남어 중 각 영역에서 택 1과목(4학점)
3. 창업·기초실무영역 : 전 계열 공통으로 택2(4학점)
4. 계열교양 : 아펜젤러대학은 계열교양으로 0-6학점 이수

[별지 3-1] 삭제 <2011.12.12.>

[별지 3-2] 삭제 <2010.10.13.>

[별지 4] 삭제 <2021.1.13.>

[별지 5] 전임교원의 책임학점 <신설 2013.12.11., 개정 2014.2.4., 2014.8. 27., 2014. 2015.6.10., 2016.7.13., 2017.9.13., 2018.9.12., 2018.11.14., 2019.2.15., 2019. 8. 8., 2020.11.11., 2020.12.9., 2021.10.13.>

구분	책임학점 (시수)	비고
부총장	2	
일반대학원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대학교육혁신원장, 퇴직까지 남은 기한이 1년 이하인 교원(정년 및 명예퇴직에 한함)	3	
대학장, 교목실장, 대덕밸리캠퍼스장, 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교수협의회장, 평생교육원장, 대학교육혁신부원장, 성과관리센터장, 중앙도서관장, 정보관리센터장	6	
특수대학원장, 유치원장, 박물관장, 배재학당역사박물관장, 생활관장, 한국어교육원장, 배재미디어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교책연구소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부학장, 학생성장센터장	7	
정년계열교원	연구중점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	6 9
비정년계열교원	연구중점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	0~6 9~12

1. 삭제 <2019.2.15.>
2.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책임학점 3~6학점은 3학점 이상, 7학점 이상은 6학점 이상 학부에서 강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3.>
3. 정부 및 지자체 사업 등 사업단장 또는 수탁 부서장의 책임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학제 개편으로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 소속의 교원은 신규 교과목 개발을 위해 2년간 책임학점을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한다. <신설 2017.9.13.>
5. 책임학점(시수)은 강의(실습 포함)학점(시수)만 인정한다. <신설 2021.10.13.>
6.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상담교수의 책임시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0.13.>
7. 교수노동조합 대표간부 1명에 대하여 3시수를 감면한다. <신설 2022.1.25.>